

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4. 10. 화순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4. 10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4. 10. 11

(제124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산업·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)

2. 제안 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 : 도시경제과장 양 정 열

나. 제안사유

- 농업·농촌기본법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40조, 제41조에 의거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산업과장(간사)을 『농산과장』으로 명칭을 변경하고
- 『전문위원』은 ‘서기’를 겸한다고 되어 있으나, 실질적으로 <전문위원>의 기능은 불필요하므로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조석호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, 해당 부서장의 명칭변경과 불필요한 『전문위원』의 명칭을 삭제하는 내용이므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, 기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절차상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치는 등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.

4. 결의 답변요지

“생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임 : 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농정심의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간사는 농산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농정기획담당이 되며 간사의 지시에 의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“원안 의결”

7. 붙 임 : 화순군오수·분뇨·축산폐수처리및분뇨수집수수료등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